#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47 발의연월일: 2020. 9. 9.

발 의 자: 김철민·서동용·김민철

민형배・황 희・김윤덕

전혜숙 • 이정문 • 맹성규

송옥주・유기홍・박 정

이원욱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 대한학자금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운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의 학점 취득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학자금 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임.

실제로 정부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19년 2.2%, 2020년 1학기 2.0%, 2 020년 2학기 1.85%로 꾸준히 떨어지고 있는 반면,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은 은행 자체 상품을 통해 정부 학자금 금리의 2배 이상을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출 조건 역시 까다로워 신입생의 경우 사실상대출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이에 고등교육기관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의 교육·훈련시설 등을 포함시 켜 학자금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라목 및 제3조제2항).

#### 법률 제 호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의 교육·훈련시설등

제3조제2항 중 "다목까지"를 "라목까지"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6
목의 학교 또는 시설 등을 말	
한다.	<u>.</u>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
	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u>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u>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
	런기관 및 군의 교육・훈
	<u>런시설 등</u>
<u>라.</u> (생 략)	<u>마.</u> (현행 라목과 같음)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3조(학자금 지원 대상) ① (생	제3조(학자금 지원 대상) ① (현
략)	행과 같음)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②
제25조에 따른 학자금대출 신	
용보증계정의 보증으로 금융회	
사등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	
을 수 있는 대학생은 제2조제6	

호가목부터 <u>다목까지</u> 의 고등교	<u>라목까지</u>
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으로 한다.	